"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"

보 도 참 고 자 료

2014. 1. 13. (월) 10:00부터 보도 가능

작성부서	금융감독원 IT감독국, 개인정보보호TF			
책 임 자	김윤진부국장(3145-7182)	담 당 자	이수인 선임조사역 (3145-7837) 차재성 수석조사역 (3145-7852)	
배 포 일	2014. 1. 13.(월)	배포부서	공보실(3145-5789~92)	총 4매

제 목 : 금감원, 금융회사에 대해 정보보호 강화 강력히 주문

□ **금융감독원**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**고객정보 유출사고**가 연이어 **발생**한 것과 **관련**하여

○ '14.1.13일(월) 오전 10시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최종구 수석부원장 주재하에 각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의 CISO* 및 CPO**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금융회사 정보보호 담당 임원회의」를 **개최**하였음

* CISO(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) : 정보보호최고책임자
** CPO(Chief Privacy Officer) : 개인정보보호책임자

□ 최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**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**하고 고객 **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**할 방침임을 설명하는 한편, **재발방지**를 위해 **고객정보보호 대책을 강화**할 것을 **당부**하였음

① 직원 등 내부이용자에 의한 정보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**내부 통제절차 강화**

② 최근 정보유출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진 대출모집인, 정보시스템 개발인력 등 **외주용역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**

③ 외부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**정보기술 부문 보안 대책 강화**

□ 한편,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**오늘(1.13일)부터 3개 카드사** 및 **1개 신용정보회사**에 대해서는 **현장 검사를 착수**하였으며,

○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'14.1~2월중 **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**할 계획*임

* **자체 점검결과 및 보완계획이 미흡**하거나 **보안실태가 취약**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**필요시 추가 현장 검사**를 실시할 예정

□ 또한,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「고객정보보호 강화 방안」을 마련하여 **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금융회사에 대해 이행하도록 지도**하고, **법규 반영사항 등**은 **금융위 TF에서 논의**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
○ 아울러, 고객정보의 부당유출 및 불법유통 사례 신고를 접수*하는 **「정보유출 감시센터」를 '14.1월중 금감원내**에 **설치**하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**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**할 계획임

* 신고자는 금융거래 정보의 매도·매입자, 거래되는 사이트, 유출 금융회사 등 불법 금융거래 유통관련 정보를 1332, 금감원 홈페이지, 이메일 등으로 신고

※ 별첨 :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유의사항 1부. 끝.

<별첨>

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유의사항

◆ **고객정보 관리 및 유출 방지관련 법규정*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부문은 즉시 보완조치**

* 전자금융거래법,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법 및 관련규정

1. 고객정보관리 내부통제 부문

1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및 절차 점검

○ 개인정보, 신용정보, 금융거래정보 등 **고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**하기 위한 **규정 및 절차 내용 점검**

2 고객정보 접근통제 및 권한 관리 철저

○ **고객정보 조회 권한**을 직급별, 업무별, 내·외부 직원별로 **차등 부여**하고 **과다조회**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**정기·수시 점검**

○ 고객정보를 **USB메모리** 등 이동저장매체에 **저장**하거나 **외부 전송하는 수단에 대한 통제 강화**

○ 조회한 **고객정보의 PC저장 및 출력**시 **기록을 유지**하고 정기적으로 점검

3 고객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 모니터링 강화

○ 고객정보의 외주업체 등 **제3자 제공을 통제**하고 보유기관 경과, 처리목적 달성 고객정보는 파기

4 고객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사고대응 체계 운영

○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**교육**을 정기적으로 **실시**하고 고객정보 유출관련 사고보고, 고객안내 등 **사고대응체계 마련**

2. 외주업체 보안 관리

1 외주업체 및 외주인력 관리 강화

○ 보안전담조직에서 **아웃소싱업체 보안관리**를 철저히 수행

2 아웃소싱 상주직원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

○ DB접속권한 제한, DB작업내역 자동저장, 외부반출 통제 등 아웃소싱 직원의 자료유출 경로 차단을 위한 대책 수립

3 외주업체의 고객정보 이용 통제

○ 외주업체와 업무계약 만료시 외주업체 보유 고객정보 파기 및 사전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금지

3.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기술 부문

1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강화

○ 비밀번호의 정기적인 변경(분기 1회), 보관시 암호화,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하는지를 점검

2 시스템 개발 시 고객정보 사용에 대한 보안통제를 강화

○ 시스템 개발 시 고객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가 종료한 후에 고객정보를 삭제하는지 점검

3 내·외부직원의 PC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

○ 직원 PC에 고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의 불필요한 보관을 금지하고,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유출 방지대책*을 수립

* 책임자 승인 및 보관내역 관리, 방화벽 우회 인터넷접속 차단 등